##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8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박용갑・이해식・김영호

권칠승 · 소병훈 · 한준호

복기왕 • 전용기 • 이병진

정준호 • 추미애 • 장종태

박상혁 · 서미화 · 장철민

강유정 • 서삼석 • 박희승

박정현 • 조인철 • 김영화

윤준병・황명선・박 정

의원(24인)

### 제안이유

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사망하면서 2025년 2월 생존 애국지사는 강태선, 김영관, 오성규, 이석규, 이하전 애국지사만 남았기에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60%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 2022년 2월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3년 이우숙과 외증손녀 최광희, 김용애의 생존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인 최광희, 김용애는 물론, 3녀 이우숙의 동반가족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대상을 한정해 논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나.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 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6항).
- 라.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를 "직계비속 중 1명 또는 중·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를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제26조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다"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		
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	3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		
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		
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u>직계비</u>	<u>직계비</u>	
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속 중 1명 또는 증・고손자녀	
	<u>를</u> 손자녀로 본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2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		
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u>고려하</u>	<u>고려하</u>	
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u></u>	
<u>정하여</u>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
-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 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u>경우</u>
- ③ ~ ⑥ (생 략) 제17조(의료지원) ① ~ ④ (생

략)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 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 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삭 제>

<삭 제>

(3) ∼ (6) (연행과 같음)
제17조(의료지원) ① ~ ④ (현행
과 같음)
5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 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u>75세</u>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⑦ ~ ⑧ (생 략)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 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 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
하ㅁ	耳			
6				- <u>65세</u>
7	~ ⑧ (ক্	변행고	<b>가</b> 같음)	
11262	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히	划)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u>지</u> 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독립유공자의 <u>유족</u> 중 세대 주

\_\_\_\_\_

------ <u>지</u> 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 2. ----- 유족 또는 가족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 족을 포함한다) -----